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6나1588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C

변론 종결 2016. 5. 13.

판결 선고 2016. 6. 3.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2. 선고 2015가단518307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B은 연대하여 10,915,461원 및 그중 10,443,777원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5. 7. 25.까지는 연 12%, 2015. 7.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2014. 9.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4. 9. 17. 접수 제47346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자신의 처인 피고 앞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사건 건물에 대한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비용으로 취득하여 그 중 1/2 지분을 남편인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피고 명의로 회복시킨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건물의 매수자금을 전부 부담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부부는 남편 B이 A를 경영하면서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하였을 뿐 피고는 별달리 소득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A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아무런 급여를 받지 않았다), A를 경영하던 B이 우리은행(대출자 및 근저당권자)에게 이 사건건물 전체를 담보로 제공한 후 2005. 5. 6.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고, 2007. 10. 4. 채권최고액 미화 6만 달러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제한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B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B로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2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는 그 남편인 B과 함께 A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와 금전거래관계를 가지고 B의 해외체류 기간 동안

B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해 온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강동원, 판사 문현정

별지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4 - 403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제4층 제403호 84.8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 1563.6㎡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 비율 1563.6분의 21.45. 끝.

